
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성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6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1. 25.

발의자 : 정성호 · 김두관 · 김병기

김병주 · 김승남 · 김영배

양경숙 · 양향자 · 유정주

윤건영 · 윤준병 · 정일영

정태호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병기 · 장비 ·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· 연구 · 개발 · 시험 및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 · 연구 · 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 또 열악한 처우로 고급 인력인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임.

이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인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, 이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

방역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8호) 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한다.

8.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성에 관한 사업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업) ①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	제7조(사업) ① ----- ----- ----- -.
1. ~ 7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~ 7. (현행과 같음) <u>8.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역량</u> <u>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와</u> <u>양성에 관한 사업</u>
<u>8.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</u> 에 부대되는 사업	9. ----- <u>제8호</u> ----- -----